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나목,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4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우정사업본부장

서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1. 감액대상

감액대상 서적우편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발행인·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이어야 한다.

나.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된 것이어야 한다.

다. 출판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비정기적 간행물이어야 한다.

2. 감액요건

가.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1) 직접 배달할 우체국

2)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3) 우편집중국

나. 1회 발송 최소우편물 수

1) (기본감액 대상) 일반우편물로서 100통 이상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50통 이상 요금후납우편물

2) (구분감액 대상) 일반우편물로서 2천통 이상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1천통 이상 요금후납우편물

다. 기본 감액률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

1)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이어야 한다.

2)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서적'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3) 우편엽서, 빈 봉투, 지로용지, 발행인(발송인) 명함은 동봉이 가능하다. 다만, 제본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1매에 한하고 이를 본지 및 부록과 함께 제본한 경우는 수량의 제한이 없다.

4) 우편물에는 본지의 게재내용과 관련된 물건(이하 '부록'이라 함)을 첨부하거나 제본할 수 있다.

가) 부록은 본지에는 부록이 첨부되었음을 표시하고, 부록의 표지에는 '부록'의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부록을 본지와 별도로 발송할 경우는 감액을 받을 수 없다.

다) 부록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액을 받을 수 없다.

5) 본지, 부록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 외 내용물(부록, 기타 동봉물)의 무게는 본지의 무게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6) 상품에 관한 유·무형 상품의 설명, 가격, 판매처 및 구입방법 등을 명시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가 전 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우편물은 감액을 받을 수 없다.

7) 서신성 인사말, 안내서, 소개서, 보험안내장을 본지(부록포함)에 제본하거나 동봉하는 우편물은 감액을 받을 수 없다. 단, 간단한 인사말은 본지에 직접 기재할 수 있다.

8)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우편요금 납부표시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라. 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요건

1) 일반 요건 : 「다량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014-42호)」 '2,라(물량 및 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을 적용한다.

2) 제출 요건 : 「다량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014-42호)」 '2,마(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을 적용한다.

3. 감액범위(감액률)

가. 기본 감액률 : 일반우편요금의 40%

나. 구분 감액률(우편물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률)

구분	우편물 접수내역		접수국 기준	올바른 우편번호 바코드 인쇄	집중국별 파렛트(pallet) 적재	우편번호 6자리 구분	규격우편물		규격외 우편물	도로명주소	최고
							수취인 주소인쇄규격	상자접수	집중국별(시,구,동) 적재접수		
규격우편물	3자리	우편집중국	1%	1%	1%		1%	1%		1%	6%
		우편집중국(배달국 관할)	5%	1%			1%	1%		1%	9%
	6자리	우편집중국	1%	1%	1%	1%	1%	1%		1%	7%
		우편집중국(배달국 관할)	5%	1%		1%	1%	1%		1%	10%
	6자리	직접배달국(자국접수자국배달)	7%				1%	1%		1%	10%
규격외우편물	3자리	우편집중국	1%	1%	1%				1%	1%	5%
		우편집중국(배달국 관할)	5%	1%					1%	1%	8%
	6자리	우편집중국	1%	1%	1%	1%			1%	1%	6%
		우편집중국(배달국 관할)	5%	1%		1%			1%	1%	9%
	6자리	직접배달국(자국접수자국배달)	7%						1%	1%	9%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44호(2014. 8. 4.)는 폐지한다.